

국토교통부령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토교통부 (녹색도시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공원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한편,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(안 제8조)

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규정함.

나.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(안 제9조)

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, 수변공원에 교양시설,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함.

다.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(안 제11조)

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(수목원, 순환회전차, 유스호스텔, 승마장, 골프장, 일반경기용 운동시설, 동물놀이터, 보훈회관)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나목 중 “자연·인문·관광환경”을 “자연·인문·관광환경,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투자계획”을 “연차별 집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7호 중 “·운동시설·교양시설 및 편익시설”을 “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제외한다)·운동시설·편익시설”을 “제외한다)·운동시설·교양시설(온실, 전시장, 생태학습원만 해당한다)·편익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“과학관”을 “전시장, 과학관”으로, “한정한다) 및 편익시설”을 “한정한다)·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전단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”을 “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

로 제1호, 제1의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8호, 제11호, 제12호의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제11호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”을 “문화공원·체육공원·제15조제1항제3호아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8조제3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이하 “공원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	제8조(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. (생략)	3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자연 · 인문 · 관광환경</u> 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	나. <u>자연 · 인문 · 관광환경,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 현황</u> -----
다. · 라. (생략)	다. ·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공원조성을 위한 <u>투자계획</u> 및 재원조달방안	마. ----- <u>연차별 집행계획</u> -----
바. (생략)	바. (현행과 같음)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 · 관리기준)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	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 · 관리기준) ①-----

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
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
· 관람 · 이용 · 안내를 위한
시설로서 조경시설 · 휴양시설
(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
외한다) · 운동시설 · 교양시설
및 편익시설로 할 것

8.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
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
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
경시설 · 휴양시설(경로당 및
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) · 운
동시설 · 편익시설(일반음식점
은 제외한다) 및 도시농업시
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
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
서 설치할 것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· 운동시설 · 교양시설
· 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(특
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
특별자치도 · 시 또는 군의 조
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
한한다)-----

8. -----

제외한다) · 운
동시설 · 교양시설(온실, 전시
장, 생태학습원만 해당한다) ·
편익시설-----

9. (생 략)

10.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
공원시설은 조경시설·휴양시
설(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
제외한다)·유흥시설·운동시
설·교양시설(고분·성터·고
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
것으로서 역사적·학술적 가
치가 높은 시설, 공연장, 과학
관, 미술관, 박물관 및 문화예
술회관으로 한정한다) 및 편
익시설로 하되, 원칙적으로 연
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
할 수 있도록 할 것. 이 경우
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
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
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1. (생 략)

12.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
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
공원시설은 조경시설·휴양시
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 및
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
시설(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
다)로 할 것. 이 경우 별표 1
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

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
----- 전시
장, 과학관-----
----- 한정한다)·편익시
설 및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
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
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
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
다)----. -----
-----.

11. (현행과 같음)

12.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

-----.

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 ① (생 략)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1. ~ 10. (생 략) 11.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 물놀이터: 10만제곱미터 이상 의 근린공원 및 <u>법 제15조제1 항제3호사목</u>에 따른 공원 12. (생 략) ③ ~ ⑨ (생 략)	----- ----- 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<u>. 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 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제1호, 제1 의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8 호, 제11호, 제12호의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----- ----- <u>문화공원·체 육공원·제15조제1항제3호아 목</u>----- 1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
--	---